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2016.04.12)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가스공사(이하 “당공사”라 한다)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사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예상종합평점 등을 감안·판단하여 차순위 입찰자에게 미리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해당 업체가 스스로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됨을 인정하여 부적격처리 요청을 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제2-2호 또는 제2-3호)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 4 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입찰

: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 10억원 미만인 제조입찰

: [별표 2], [별표 1-1], [별표 1-3], [별표 2-2]

3. 제조가 아닌 구매입찰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입찰

: [별표 3], [별표 1-3], [별표 2-3]

②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안내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 5 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항목별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6 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1]에 의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2]에 의한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에 준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3]에 의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3-1], [별표 3-2]에 의한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배점한도 (+3~-2)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제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제 7 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의한다. 다만, 면허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 공사업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재무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재무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 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당해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확정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제 8 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장이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부서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한 비율로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잔여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아니한다.

제 9 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8조 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 11 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3년 1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2. 지침 제2009-25호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2009.9.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9월 1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2. 지침 제2013-22호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2013.11.20)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4년 03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2. 지침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2014.9.1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6년 04월 12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2. 지침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2015.3.30)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I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2.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15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II 입찰가격			45	평점산식 ([별표2-1]참조)
III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중소기업 등	+3~-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다. 부정당업자 제재		
IV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별표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I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2.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II 입찰가격			60	평점산식 ([별표2-2]참조)
III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중소기업 등	+3~-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다. 부정당업자 제재		
IV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별표 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제조가 아닌 구매입찰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I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II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별표2-3]참조)
III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중소기업 등	+3~-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다. 부정당업자 제재		
IV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별표 1-1] 납품실적(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구 분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 가점	등 급	평점
소기업, 소상공인,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4	A. 100% 이상	6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B. 60% 이상 - 100% 미만	5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C. 30% 이상 - 60% 미만	4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D. 5% 이상 - 30% 미만	3
창업초기 기업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6	A. 100% 이상	4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B. 60% 이상 - 100% 미만	3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C. 30% 이상 - 60% 미만	2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D. 5% 이상 - 30% 미만	1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	A. 100% 이상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B. 70% 이상 - 100% 미만	9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C. 50% 이상 - 70% 미만	8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D. 20% 이상 - 50% 미만	7
					E. 10% 이상 - 20% 미만	6
					A. 100% 이상	7
					B. 60% 이상 - 100% 미만	6
					C. 30% 이상 - 60% 미만	5
					D. 5% 이상 - 30% 미만	4

※ [주]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 ② 심사항목 “가”와 “나”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4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본점수 6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③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창업초기중소기업확인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초기중소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1-2] 기술능력(배점 한도 1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1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3.0
			① 3인 이상	2.5
			② 3인 미만	2.0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1.5
			① 3인 이상	1.5
② 3인 미만	1.0			
C. 기능사 보유	1.0			
① 3인 이상	1.5			
② 3인 미만	1.0			
D. 미보유	6.0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연수 평가	5	A. 5년 이상	5.0
			B. 3년 이상 5년 미만	4.5
			C. 1년 이상 3년 미만	3.5
			D. 1년 미만	3.0

※ [주]

① “가”심사항목의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해당 자격자의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2.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나”심사항목의 공장등록 연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 중 소분류)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기간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전으로 인하여 단절된 기간에 대하여는 연속된 것으로 본다.
2.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따르며, 국외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이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따른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 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해당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하며 기본점수에 A,B,C,D 등급의 해당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창업초기중소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심사항목과 “나”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가”심사항목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2. “가”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의 평점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D등급의 평점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1-3]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 ② 적격심사 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 초기 중소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II. 입찰가격

[별표 2-1] 입찰가격 (배점 한도 4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4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circ \text{ 평점(점)} = 45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2-2] 입찰가격 (배점 한도 6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circ \text{ 평점(점)} = 6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2-3]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circ \text{ 평점(점)} = 7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배점한도 +3점 ~ -2점)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 점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기술 및 디자인 인증	3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 기술)인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GS (국산 우수S/W)마크 보유자	2
			B. 특허, GD인증 보유자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보유자	1 0.5
나. 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3	A.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 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B. "건"자 마크, GQ마크, K마크를 받은 자 C. 싱글PPM 인증 보유자	1 0.5 1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B. GR, 환경표지인증 보유자 C.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D.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E.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F.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서 보유자 G.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자	1.5 1.5 1 1.5 1.5 1.5 1.5
다.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3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 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B.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D. 창업초기기업	1.5 1.0 1.0 0.5 0.5 1.0
라.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3		

[별표3-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2	A. 최근 6개월 이내에 당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다. 부정당제재	부정당제재 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 [주]

-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별표 3-1]의 “나(품질보증)”항의 “A”등급 및 [별표 3-2]만 적용한다.
- ② [별표 3-1]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평가는 다음과 각 호에 따른다.
 1. “가(기술 및 디자인인증 보유), 나(품질보증), 다(환경관리)”항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호의 심사항목의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 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평점이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

이 연장된 인증서의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1] “가”항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1.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2. 통상실시권자
3. '99.7.1~'06.9.30. 출원하여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 등록

④ [별표 3-1]“나(품질보증)”의 “A.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⑤ “라.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B(장애인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B.(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 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D(창업초기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업초기기업확인 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중복평가

- 1) “A(중소기업)”, “B(여성·장애인기업)”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B(여성·장애인기업)”, “D(창업초기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3) “A(중소기업)”과 “D(창업초기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 4) “A”의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높은 점수로 한번만 평가한다.
- 5) “B”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적용례) “Y”기업 :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 여성기업(3년 미만),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 벤처기업(1.5점) + 여성기업(0.5점) + 장애인기업(0.5점) = 2.5점 (중소기업 점수(1.0점) 제외)

⑥ [별표 3-2]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가”항의 납품지연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

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다” 심사항목의 “A”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 ⑦ 적격심사 대상자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관련 정보를 적격심사 신인도 증빙자료로 대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 입찰자는 음영표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공 고 번 호	
입찰일시	
입찰건명	
입찰금액 (vat 포함)	
추정가격 (vat 제외)	

2. 심사대상입찰자

업체명	
대표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위 및 성명	
연락처	(e-mail)
	(전화) (팩스)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납품실적	10		
기술능력	15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45		
신인도	+3 ~-2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납품실적	1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60		
신인도	+3 ~-2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인도	+3 ~-2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3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점
------	------

I.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점

1. 납품실적 : ()점

가. 최근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3. 경영상태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등급표시”)

II. 입찰가격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45-2 \times (88/100-a/b) \times 100 $	평점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0점으로 평가한다.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작성한다.

III. 신인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종합평점 ()점

I.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점

1. 납품실적 : ()점

가. 최근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경영상태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등급표시”)

II. 입찰가격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60 - 2 \times (88/100 - a/b) \times 100 $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3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3호)

종합평점	()점
------	------

I.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점

1. 경영상태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등급표시”)

II. 입찰가격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 - 2 \times (88/100 - a/b) \times 100 $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작성한다.

III. 신인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제 출 처	한국가스공사 ()지사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일자	수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기 관 명 :				년 월 일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주】

-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④ 한국가스공사와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물품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제23호]참조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 신청자	
납품실적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납품기관 또는 한국가스공사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	6	기술 및 디자인 인증 보유	관계기관 등	
	7	품질보증	관계기관 등	
	8	환경관리	관계기관 등	
	9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주】 연번 4, 6, 7, 8, 9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